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20.3.12.(목) 15:00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문석

#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이상식 의원 등 6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3월 6일

3. 제안 이유

○ 도내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안 제7조)

다.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안 제8조)

라.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안 제10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에서 자동차부

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계 그리고 제정 절차 등은 적절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함.